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시행일시 2022년 6월 20일부터

이 천 단 월 초 등 학 교

이천단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이천단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 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및 「대한민국 헌법」제 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 ③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 ①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고라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 를 가진다.
- ②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 19조 및 96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①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학생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 제할 수 있다.
- ⑤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 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 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의 권리】

-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진다.
-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

- 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 ·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①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①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 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

며 학생한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어할 수 있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 야 한다.
- ④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 ①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학생들의 공연, 전시, 축제 활동 등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 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①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관련단체 등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절 학생인권의 진흥

제28조 【학교 인권주간 운영】

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인권 주 간을 설정하여 운영 한다

제29조 【학교 및 보호자 인권교육 · 연수】

- ①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 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학생생활지도협의회

제30조【구성】

- ①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
- ③회장은 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 째 시 그를 대신한다

제31조【교직원의 의무】

본교 교직원은 학생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

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생활지도협의회의는 교직원협의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지도협의 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혐의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하며 학생생활인권부장이 부위원장으로 주관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불임1〉과 같다

제35조【위원회의 심의 범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②기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36조【선도원칙】

- ①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 ④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학생 선도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고 특히 징계에 있어서는 담임교 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7조 【위원회 개회 및 의결 처리】

- ①본 위원회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의 제청으로 교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학교장이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의를 요구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재의결한다.
- ④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혐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 ①학생생활인권부장은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의 조사, 선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학교장의 징계 확정 결재, 징계 학생의 지도 관리, 징계 해제,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촉괄한다.
- ②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을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④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 ⑤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⑥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0조【징계의 방법과 기간】

징계의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 봉사

-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고,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정된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등을 부과하다
- 3. 1일 2시간 이내. 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는 아래 해당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봉사 활동 명령서를 받아 활동한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 3.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 복지관 위문활동 등)
- 4. 1일 5시간이내, 5일이내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특별교육 이수: 학생이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선도 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특별교육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 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 6. 1일 5시간 이내, 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 1. 다음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 가. 학생선도규정에 언급된 징계를 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 나. 문제의 학생이 출석을 했을 때 학교 전체의 교육이나 다른 학생에게 나 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

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위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 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학교의 장은 위의 선도(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41조【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 청구】

①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의 재심 요구】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기록 및 사무처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보관한다.

제44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선도위원회는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학생 행동 개전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5조【학생 선도 기준】

학생 선도 기준은 <붙임2>와 같다.

제46조【학생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7조【학생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매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④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4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49조【학교분쟁조정 위원회】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사안에 대하여 심의·조정· 권고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0조【기본품행】

- ①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 ②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③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51조【자율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 쓴다.

제5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5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5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55조【폭력예방】

-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6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 ①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성에 대한 옥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⑤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57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학생생활인권부 에 등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한다.
- ②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58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각 호와 같다.

- ①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④학생생활지도협의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 ⑤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59조【용의사항】

용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 ①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 ②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③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④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⑤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60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61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인권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62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 야 한다.

제63조【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③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 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 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 ⑥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로 처리한다.
- ⑦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64조【결석】

-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 ②사고로 인한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 석하는 경우
-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④경조사 결석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1. 결혼: 형제, 자매 (1일)
- 2. 입양: 본인 (20일)

3.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5일)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일)

부모의 형제·자매 (1일)

제65조【출석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 상으로 하다
- ③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절 교외생활

제6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 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서 행동한다.
- ⑥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통신

제67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6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①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휴대폰은 수업시간, 교내 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 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②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활동

제69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한다.

제70조【운영】

학생은 학생회(학급·학생자치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 인권규정 제·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며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71조【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학생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으로 구성한다.

- ②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 ③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학생자치회 소집 및 회의 개최시 학교장 승인제도를 폐지한다.
- ⑤학생자치한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안 같다.
-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 ⑥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 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72조【학급자치회】

- ①학급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학급자치회 대표는 학생회를 대표하며 각 학급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 ③교육과정 내의 학급자치회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73조 【권리 및 의무】

학급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4조【지도】

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5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안 같다

- ①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 활동
- ②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각종 봉사활동

제76조【효력발생】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77조【개정방법】

- ①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 ②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제7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붙임 3>과 같다.
- ②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 인권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은 2018년 9월 26일 개정하여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③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 개정하여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④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 개정하여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

- 1) 학교단위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 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3)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나. 조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다. 임무

- 1) 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자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2)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생선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라. 기능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4)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마. 운영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시 유의할 점

- 1)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2)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 4) 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5) 퇴학처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그 이전에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장기 위탁기관 안내 및 알선 등 학생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학교단위 선도 절차

단계	내용				
사안 발생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교규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 가벼울 경우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담당교사에게 인계 • 담당 교사가 학교규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관찰 면담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위반 경중 판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조사 (중대 학교규칙 위반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사안)	·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				

	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학생 선도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 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개최이유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					
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X	I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	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			
	해될 수 있는 지도 빙	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	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	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			
	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	한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			
	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성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			
학생 및 보호자 통보	학생 및 보호자 통보 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					
	사항 등)					
나는 대나 함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나는 나라 지해 출시 지는						
선도 대상 학생	개최	선도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무제정 조사 한생	징계 수위 결정	결정사하 하색 민				

결정사항 학생 및

가정과 연계지도 및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보호자 통보

유관 기관 협조

3. 학교단위 이의 제기 절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여(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문제점 조사, 학생

담임교사 의견서 및

자기변론서

증거자료 확보

단계	내용				
이의제기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 				

	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병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심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4.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단계	내용
재심 청구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학폭 전학 조치 포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둘 중 먼저 도래한 기한까지 청구 마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도교육청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으로(①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피청구인 ③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날 ④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재심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 해당 학교는 3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함.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 진술해야 함.(단, 청구인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 가능)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됨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재심 결정 →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 시행

5. 행정 심판

단계	내용				
행정 심판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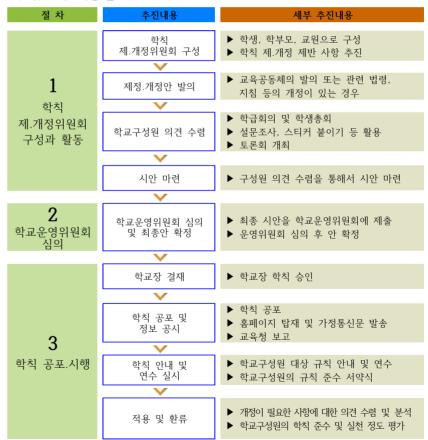
<붙임2> 학생 선도 기준

			징계 구분			
구분	항	위반 행위 내용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2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0	0		
	3	교권을 고의로 심하게 모독한 학생		0	0	
준법	4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연행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0	0		
正日	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0	0	0	
	6	공공 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7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0	0	0
	8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0	0
	9	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	0			
예절	10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0		
	11	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0	0		
	12	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0			
	13	교육활동(수업, 고사,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0			
교육	14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 또는 방조한 학생(해당 과 목 점수 0점 처리)	0			
활동	15	교육활동(수업, 고사, 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16	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0	0		
	17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절취 또는 누설한 학생	0	0	0	
	18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무단결석을 한 학생	0			
근태	19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0	0		
근 네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0	0		
	2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0	0	0	
	22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0	0		
약물	23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후 소란을 일으킨 학생	0	0		
기건	24	공공연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0	0		
	25	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0	0	
E) -0	26	도박을 한 학생	0	0		
퇴폐 행위	27	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0	0		
.,	28	학생으로서 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0	0		
사이	29	음성·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영상매 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0	0	0	
	30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 출한 학생	0	0	0	
버	31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복제·배포한 학생	0	0	0	
	32	반사회적·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 거래,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등)를 개설·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절서를 해진 학생	0	0	0	

<붙임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의 개요
- 가.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나. 학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다. 학교규칙 제·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시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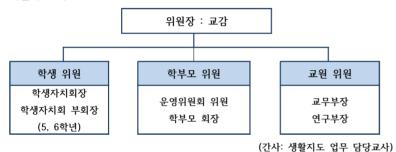
3.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

가. 구성 원칙

- 1)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한다.
- 2) 총 인원은 8~12명 정도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3)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회 조직



연번	구분	성 명	소속(직)	비고
1	위원장	000	교감	
2	위원	000	교무부장	교원대표
3	위원	000	연구부장	
4	위원	000	학생자치회 회장	
5	위원	000	학생자치회 부회장	학생대표
6	위원	000	학생자치회 부회장	
7	위원	000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하는 H 디디
8	위원	000	학부모회장 학부모위원	학부모대표
9	간사	000	본교 생활인권담당교사	업무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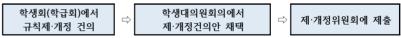
다. 역할

- 제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4. 학교규칙 제 · 개정안 발의

가.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가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칙 개정을 요청한다.
 - 1) 학생의 발의(학생회를 통한 발의)



- 학생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급회의, 학급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제·개정 절차 초기부터 학생들의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학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개정 건의, 운영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신문고'나 '우체통'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회의나 학생대의원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학부모의 발의



- 학부모 의견은 다양한 방법(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다.
- 건의안에 대한 정족수는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3) 교원의 발의

교직원회의 등에서 규칙 제·개정논의

제·개정 건의안 채택

□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 교원은 교직원 회의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 유의 사항

- 학부모, 교원에 의한 발의는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제·개정안 발의는 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지나치게 잦은 개 정 방의는 지양하도록 하다
- 학년말에는 당해 연도 학칙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5.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 가. 방법 및 내용
- 1)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2) 방법: 제·개정위원회가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생: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원: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 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 실시

나. 유의 사항

- 제 ·개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생활지도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조항 등은 수 정하거나 삭제한다.
- 학생·학부모·교원은 누구나 토론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6. 시안 마련 및 토론회 실시

- 가. 방법 및 내용
-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 필요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 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 학칙 제·개정안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 정한다.
- 나. 유의 사항

- 투표, 설문조사나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시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이천단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ㆍ구 대조표

영역	개 정 전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3 장 학생의 인권	②학교는 제 1항에서 예시 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제6조 차별반지 않을 권리 ②학교 구성원은 제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이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 대 응이 필요함(교육감, 국가인권 위원회와 혐오표현 공동대응
	제38조 학생생활교육위원 회의 운영	제3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⑦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 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한다. 는 조항 추가	-학생생활위원회 절차에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부재한 부
제 3장 학생생활 지도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불입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 시 및 장소, 개최이유 결정 후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이 유를 사전에 안내하여 위반 행 위에 대해 학생이 충분하게 소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 정 필요함
	제4절 학생 자치활동 제70조 어린이회 제71조 전교어린이회 제72조 학급어린이회	제4절 학생 자치활동 제70조 학생회로 명칭 변경 제71조 학생자치회로 명칭 변경 제72조 학급자치회로 명칭 변경	•학생 자치회 규정으로 개정 필요